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0

제출년월일: 2021.06.29.

제　출　자: 송파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골목형상점가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6조)

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규칙(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사항: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보육과(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1.4.29. ~ 2021.5.19.(20일간)

(2) 심사대상 규제사무: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고 있는 곳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

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수행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소 재 지:

3. 구역면적: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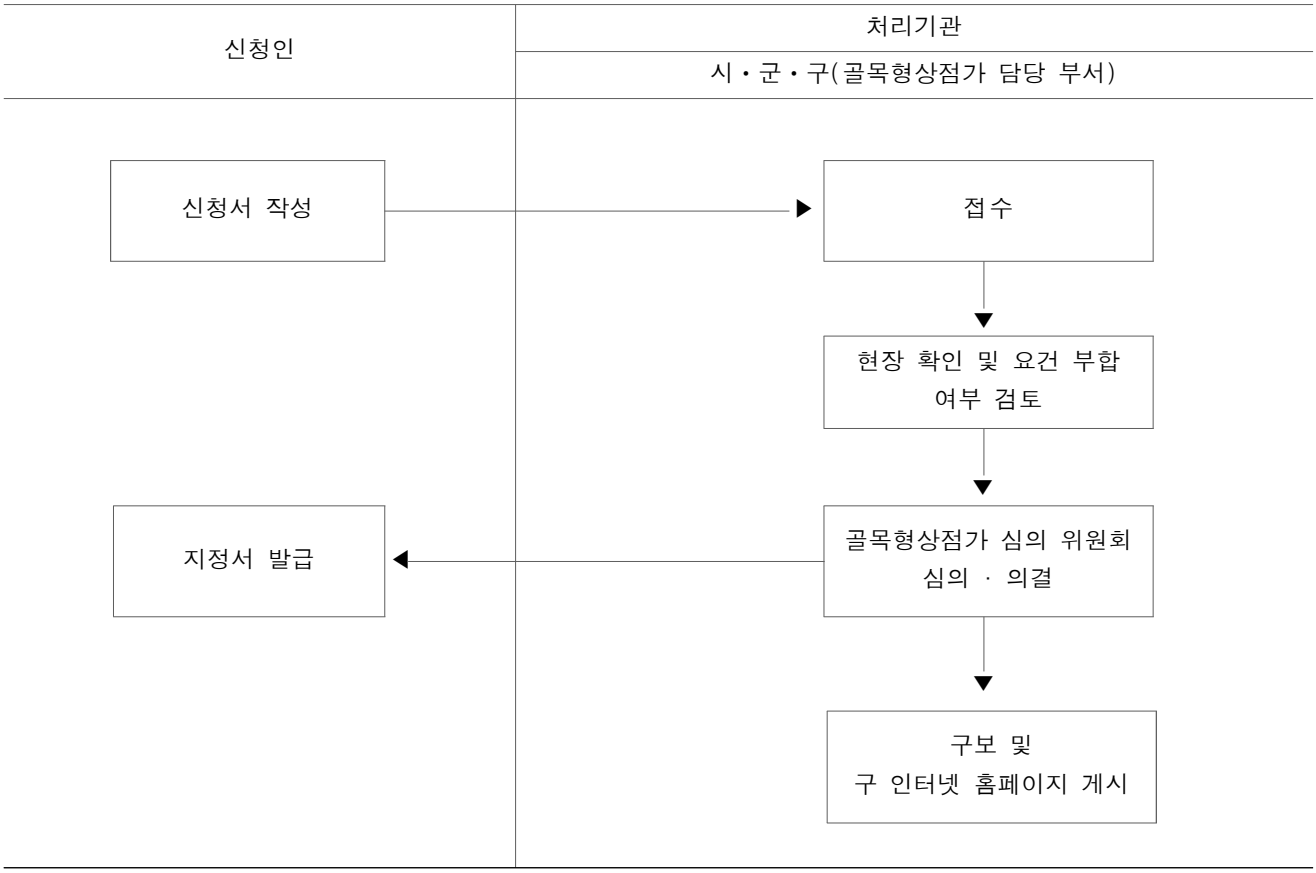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각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관 련 법 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이유) 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함

4. 작성자 : 행정6급 오영선

검토자 : 시장경제팀장 오순애

결재자 : 지역경제과장 강필구